

### Ⅲ. 주요 경제 현안

#### 1. 지주회사의 '조건부' 허용

- (내용)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해 지주회사를 '조건부 (결합재무제표 작성, 상호지급보증 해소)'로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.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로 지주회사 부채비율의 100% 이하,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상호출자/이중 지주회사 금지, 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 비율은 50% 이상 등임
- (정책 제언)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서 실제로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은 거의 없음. 따라서 규제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'원칙 자유'의 방향으로 바뀌어야 함. 만약 공정위에서 제시한 요건들이 제도화된다면, 외국인 지주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만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

#### □ '조건부' 허용안의 배경과 주요 내용

-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, 그 조건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경제력 집중 심화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함
  - 공정위는 당초 결합재무제표의 작성, 상호지급보증 해소 등이 이루어져 경영 투명성이 제고되는 2000년 이후에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음
  - 그러나 외국인 직접투자 및 M&A의 활성화를 위해, 외국인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움이에 따라 역차별 문제가 불거지고, 또 국내기업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인식 하에 '조건부' 허용안을 제시함
- 주요 내용과 일정
  -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고,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을 완전 해소한 기업만 지주회사를 설립(전환)할 수 있음
  - 지주회사 자체에 대한 규제는,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100% 이하,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상호출자 금지, 자회사간 출자 금지, 이중 지주회사 금지, 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 비율이 50% 이상일 것 등임
  - 개정안을 상정, 7월부터 허용하고, 관련 회사법/증권법/세법/노동법 개정 방침

#### □ 전망 및 문제점

- 허용 조건이 까다로워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은 당분간 어려움
  -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, 상호지급보증의 조기 해소가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음

- 또한 지주회사 허용의 부대조건이나 관련법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주회사 설립이 가져올 장단점을 파악하기가 어려움
- 예컨대 자회사간 출자 금지의 경우, 계열사간 직접상호출자만을 금지하는 것인지 간접상호출자까지 금지하는 것인지 불명확함(간접상호출자까지 금지하는 것이라면, 기존의 상호출자를 완전 해소해야 하므로 단기간에는 불가능함)

## □ 정책 제언

- **지주회사제는 경제력 집중이 아닌, 규제개혁과 구조조정**의 관점에서 보아야 함
  - 현재 기업의 당면 과제는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임. 공정위도 인정하고 있듯이 지주회사 제도는 구조조정에 매우 유리한 조직 형태임
  - 따라서 규제개혁 및 구조조정 관점에서 본다면, '원칙 자유, 예외 규제'라는 원칙 아래 지주회사 관련 규제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임
- **상호지급보증의 완전 해소를 전제로 요구할 필요는 없음**
  - 현재 상호지급보증은 2000년까지 해소되도록 되어 있음. 따라서 완전 해소를 요구하기보다는 기존의 방침대로 해소하도록 하면 됨
  - 완전 해소를 위해서는 금융권 관행 개선, 직접금융시장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함
- **공정위는 우선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해제한 후, 경쟁정책의 관점, 즉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행위를 규제하는 관점에서 관련 법규나 조건을 마련해야 할 것임**
  - 그래야만 구조조정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지주회사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임
  - 지주회사는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 중립적이므로 개별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
- **만일 공정위가 제시한 기준 및 요건이 제도화된다면, 외국인 지주회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임**
  - 그렇지 않다면, 국내기업이 기업 전략 및 경영 전략을 수립, 실행하는 데 있어 외국인 지주회사에 비해 역차별 대우를 받게 됨
  - 외국인 지주회사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기업(경영) 조직을 가질 수 있는 반면, 국내기업은 그렇지 못하므로 원천적으로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음

(박 동 철 [dcypark@hri.co.kr](mailto:dcypark@hri.co.kr) ☎724-4030)